

經濟的 決定權에 關한 研究⁽¹⁾

林 鍾 哲

고전적 자본주의하에서 생산에 관한 결정권은 기업 자유 형태로 기업이 배타적으로 행사했다. 공공재 생산 비중이 커진 수정자본주의하에서 정부는 비단 공공재 생산뿐만 아니라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제계획이란 형태로 직접적으로 생산 일반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정부가 전담하고 있는 거시경제적 결정과 또 기업이 전유하고 있는 미시적 결정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다면 어떠한 참여 형식이 좋은가를 거시적 참여 형태는 프랑스계획을 모범으로 미시적 참여형태는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 기업을 모범으로 살펴본 것이다. 결론은 프랑스형 계획은 그대로 모방할 수 있고 모방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주관리체제는 저해요인이 적지 않지만 지금 단계의 자본주의하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1. 머리말

경제사회문제 중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경제적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본주의를 정의하면서 베르너 쾰바르트(Werner Sombart)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인간집단, 즉 동시에 지휘권도 갖고 있는 생산수단 소유자와 무소유의(경제객체에 불과할 뿐인) 노동자(Nurarbeitler)가 시장을 통해 연결되어 협동하며, 영리 원칙과 경제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유통경제조직’ [Sombart(1919)]이라고 했던 것이다.

썸너 슬릭터(Sumner Slichter)가 1948년에 미국경제를 ‘노동주의경제’ (Laboristic economy)라고 부른 것도 마찬가지로 관점에서였다. 그는 “被傭者가 절대 다수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며 국민경제가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Slichter(1961)]는 이유로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사회의 3대 과제인 자유, 효율, 평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제적 결정권을 누가 소유·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역사적, 실증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거시적, 국민경제적 결정권은 프랑스의 경제사회이사회(Conseil Economique et Social)와 같은 非정부기구(Non Government Organisation)가 갖고 미시적인 기업 차원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평의회(Workers Council)와 같은 조직이

(1) 이 논문은 수암장학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갖는 것이 가장 합목적적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경제적 노력의 목표인 자유, 효율, 평등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이같은 3대 목표를 극대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적 결정권이 어떠한 제도적 틀안에 있어야 하는가를 고찰하기로 한다.

2. 自由 · 效率과 平等

일찍이 케인즈는 ‘인류의 정치문제는 경제적 효율, 사회정의 및 개인적 자유라는 세 가지를 조화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Keynes(1931)). 그러나 뒤이어 그는 사회정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정당이 갖고 있는 최대자산이며 이에 반하여 경제적 효율과 개인적 자유는 전통과 오랜 공감을 통하여 경제적 개인주의와 사회적 자유의 온상이었던 정당만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케인즈의 이같은 견해를 확대해석하면 경제적 효율과 개인적 자유는 자유주의정당, 한걸음 더 나가면 자본주의체제가 좀 더 옳이 실현할 수 있고 반면 사회정의는 사회주의정당 따라서 사회주의체제가 그 실현에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견해는 1930년대 영국 자유주의경제학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자면 피구는 1937년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비교한 소책자에서 생산상 효율 실현은 자본주의가, 분배정의 실현은 사회주의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Pigou(1937)).

현재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평등주의와 능력주의를 평가하면서 평등주의는 효율을, 능력주의는 평등을 무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자유 및 효율과 평등은 상호배척적이며 이율배반적인 가치인가. 결코 그렇게 볼 수 없게 하는 수많은 경제이론이 있고 또 철학이론이 있다. 일찍이 마샬은 단기정상 · 장기정상(short term and long term normal)을 논하면서 효율과 평등이 증가함수적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유명한 경제적 기사도론이 바로 그것이다(Pigou(1925)).

현대의 노동경제이론에서도 노동력이란 특수 상품은 다른 모든 상품과는 달리 그 가격 상승이 즉각적인 품질개선 즉 노동생산성 = 노동효율 상승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효율임금(efficiency wage)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인효과(incentive effect)가 바로 그것이다. 또 효율임금이론에서 말하는 역도태효과(adverse selection effect)는 달리 해석하면 노동력이란 특수상품은 그 가격하락이 즉각적으로 노동생산성 하락, 따라서 효율저하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Weiss(1990)).

평등은 효율뿐만 아니라 자유와도 양립할 수 없다는 믿음 역시 강했다. 일찍이 토니(R.H. Tawney)는 “자유와 평등은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반대명제로 여겨져 왔다”고 말한 바 있다(Tawney(1931)). 자유와 평등이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등주의자들이 요구하는 평등 즉 사회정의가 자유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장은 1930년대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하이엑은 “모든 사람에게 시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자유의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출발점, 동일한 기대를 보장해야 한다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에 대하여 갖는 불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嫉視’라고 말하고 “이러한 감정을 만족시켜 주고 이를 사회정의라는 훌륭한 용어로 위장하려는 추세는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Hayek(1960)). 하이엑은 1973년에 있어서도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면 개인은 비단 일반명령뿐 아니라 자신에게만 요청되는 특정한 요구에도 복종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공정한 행위를 위한 일반명령뿐 아니라 권력당국에 의한 특정한 지령에도 복종해야 하는 사회는 자유사회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Hayek(1973)).

자유와 평등이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토니는 ‘불평등의 존재가 자유에 대한 위협이며 자유는 불평등을 감소시킴으로써 획득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역설하고 있다(Tawney(1931)).

라스키(H. Laski)는 토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 양자가 절대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기자신의 완벽한 자기실현은 당연한 논리로서 다른 사람들의 완벽한 자기실현을 수반해야 하므로 정의는 평등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또 자유란 인간이 최선의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의실현을 위해서는 자유가 절대 불가결하다고 그는 생각한다(Laski(1928)).

호르바트(B. Horvat)는 정의실현을 위해 자유와 평등이 모두 필요하다는 라스키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 양자가 완전히 보완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자 한다면 그들은 동등하게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내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 역도 역시 진이다. 한편 평등은 자유를 요구한다. 권리가 적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만큼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평등한 자유는 자유로운 평등을 의미한다(Equal freedom implies free equality)”는 것이 호르바트의 생각이다(Horvat(1982)).

자연발생적인 시장질서를 유일의 진정한 자유질서라고 보는 하이엑은 퍼그슨(A. Ferguson)을 인용하여 ‘인간행위의 결과이나 인간의도의 결과가 아닌 것’(the result of

human action but not of human design)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도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정한 행위준칙인 법(Recht) 이외에도 특정조직의 행위준칙인 규정(Gesetz)의 존재와 필요성은 분명 인정하고 있다. 그에 의할 때 자유란 타인에 의한 자의적인 강제가 없는 상태(the absence of arbitrary coercion by others)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단 법(Recht)의 테두리 안에서 특정한 효과를 위한 규정(Gesetz)을 만든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자연발생적인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자의적 강제의 결여'라는 하이익적 자유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 하면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인간행위를 위한 일반규정 이외에도 특정한 부분을 위한 특별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자연조화(natural harmony)만으로 완벽한 사회조화(social harmony)를 실현할 수는 없다. 완벽한 사회조화는 시장이 실현시켜 주는 자연조화에 더하여 인간 예지가 추가될 때만 실현될 수 있는 창조된 조화(created harmony)인 것이다(Myrdal(1957)).

이 연구에서는 자유, 효율, 평등은 서로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보완적인 것이며 사회조화는 창조된 조화이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조화를 실현하고 자유, 효율, 평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결정권이 행사되려면 어떠한 거시적 및 미시적 마련이 있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巨視 次元에서 본 決定權 分散

2.1. 決定權 行使의 세 가지 類型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결정권은 대략 세 가지 형태로 행사된다. 첫째는 자원배분이라는 정부고유의 권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경우 국민총자원은 우선 공공재와 사용재라는 양대 용도에 배분되고 그 다음으로 공공재 부문에서의 의사결정은 재정부담국이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취한다. 이러한 경제적 결정권 행사 방식은 경제계획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서는 이같은 결정권 행사 양식은 시민주권(citizen's sovereignty)론에 의하여 강력히 도전받고 있다. 공공 생산에 관한 결정도 정부가 일방적, 자의적으로 하여서는 안되고 그같은 결정에 의해 영향받는 주권자인 시민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Gintis(1972)).

두번째 방식은 소비에트형 경제에서 이루어지던 것으로 정치권력당국이 정치적 목표에 입각하여 독재적으로 해왔던 방식이다. 소련에서 보듯 국민자원배분에 관한 결정은 정치국에서 이루어진다. 이같은 목표가 시달되면 국가계획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자원배분계획 및 재화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안은 당 정치국을 거쳐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은 다음 행정조직을 통하여 하부기관에 전달되고 집행된다. 소련의 경우 명분은 민주적 집권화(democratic centralization)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어도 스탈린체제하에서는 모든 경제적 결정권은 당과 그 최고지도자가 독점하고 있었다[Grossman(1974)]. 동일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정치적 목표에 근거하여 계획안이 확정되면 중앙에서 시작하여 지방으로, 상위 행정단위로부터 시작하여 하부 행정단위로 하향적인 군중대회를 개최하여 계획목표를 사후적으로 인지시킨다.

세번째 방식은 국민경제계획이란 형태로 국민자원 전체에 대한 배분을 결정하고 있는 자본주의 혼합체제 방식이다. 이러한 결정권 행사 양식도 자세히 분석하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왔던 것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1-4차계획까지는 완전히 배타적, 독단적으로 이루어졌고, 5차계획 때부터는 계획수립에 민간주체도 참여시킨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후적 들러리에 불과한 참여방식이다. 이같은 결정방식은 실질적으로는 소비에트형 결정권 행사와 동일하다. 다른 하나는 이하에서 설명하는 프랑스형 계획이다.

2.2. 프랑스型 計劃의 特徵

민주적 계획, 대중적 결정권 행사 참여는 프랑스 계획에서 비교적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계획이 처음부터 이같은 성격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모네 계획(The Monnet Plan)으로 알려진 1차계획(1946-1952)은 정부내 계획전문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실시된 것이었다. 실적은 여러 부문에서 계획치에 못미쳤지만 2차대전 전 최고 수준의 경제활동을 실현했던 1929년 수준을 회복시키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 예컨대 공업생산은 1929년 실적을 25% 웃돌 것을 계획했고 비록 목표달성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1929년 수준을 12% 웃돌게끔 하였다. 특히 철강생산은 목표치를 15%나 웃돌았다.

이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잇달아 2차계획을 실시하는 데 실패하였다. 사용자들은 경제회복은 인정하면서도 정부 간섭 증대를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다. 한편 좌파는 경제회복보다는 대자본의 특혜적 성장을 비판하였다. 또 일반국민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라고는 인플레이션뿐이라고 불평하였다. 사면초가격이 된 프랑스 정부는 계획수립 방식을 바꾸어 국민각층이 광범하고도 효과적으로 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2차계획(The Hirsch Plan, 1954-1957)을 1년 늦게 발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 계획의 3대 특징은 첫째가 사전협조경제(preconcerted economy)이고, 둘째가 유

도적 계획(indicative planning)이며, 셋째가 교육적 성격이다. 사전협조경제(économie concertée)란 계획수립의 모든 과정에 국민을 광범위하게 참여시켜 사전에 계급적, 지역적 이해관계가 조정된 계획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 계획의 핵심기구인 근대화 위원회는 보셰(P. Bauchet)의 표현대로 노동자대표 1/3, 사용자대표 1/3, 전문가 1/3로 이루어진 3자 구성체다(Bauchet(1962)).

유도적 계획이란 소련식인 강권적 계획(imperative planning)에 대비되는 것으로 목표치가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목표량(norma)으로 강제적으로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체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장을 주는 애로를 제거하여 목표달성을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조세제도, 금융지원, 사회간접자본 개발 등을 통하여 민간주체가 무리 없이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친다.

정부가 제공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계획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간주체가 스스로 작성한(사전협조경제) 계획목표를 정부가 조세·금융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도와주었는데도 불구하고(유도적 계획)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면 그 잘못은 전적으로 민간 주체의 무능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국유화뿐이라는 협박이 세번째 특징인 교육적 성격이다.

이같이 일관된, 합리적 논리와 철학에 바탕을 둔 프랑스 계획에서 각계각층의 국민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거시경제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3. 프랑스형 計劃機構

프랑스형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구와 절차를 통하여 전문가,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그리고 정당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2.3.1. 計劃委員會(Commissariat Général du Plan)

사무총장,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비서, 타자수, 운전기사, 영선요원, 사환 등을 합하여 총 1백여 명이던 인원이 1959년에 생산성위원회를 흡수한 후 1백 40명으로 늘었다. 위원회 예산규모는 1956년 현재 113백만 프랑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적었다. 위원회 산하기구로 실무위원회, 근대화위원회(Commissions de Modernisation) 및 감독 기구로 최고 위원회(Conseil Supérieur)와 부처간 연락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가 있다. 1백50명의 직원중 계획전문가는 4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위원장은 국립신용위원회(Conseil National du Crédit)와 경제사회발전기금(Fonds de Développement Economique et Social)의 위원을 겸한다.

계획위원회는 계획초안 작성 및 집행이란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의사

결정권을 행사한다. 물론 계획위원회에서 계획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정부는 지침이라는 형태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예컨대 4차계획안을 수립할 당시 정부는 목표성장률을 5%로 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지시는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계획위원회는 기준성장률 4.5%, 최고성장률 6.0%, 최저성장률 3.0%란 복수안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계획위원회의 초안에 대하여 경제사회이사회(Conseil Economique et Social) 산하 투자계획분과위원회(Investment and Planning Section)에서는 6% 성장만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수직위원회(Vertical Commissions), 균형실무위원회(Equilibrium Working Party) 및 계획위원회 3자가 협의하여 5.5%로 확정되었던 것이다.

계획위원회는 계획작성과정에서 다음 4개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달리 말하면 이들 4개 연구기관 사람들은 국민경제계획안 작성이라는 거시경제적 의사결정에 전문가 자격으로 사전적으로 참여한다. 4개 기관이란 재무부산하인 경제금융연구국(Service des Etudes Economique et Financières: SEEF), 국립통계경제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INSEE), 국립인구연구원(National Demographic Institute: INED), 소비자조사연구정보센터(Centre for Consumer Research, Study and Information: CREDOC)를 말한다.

계획위원회 산하에 있는 핵심적인 위원회가 근대화위원회다. 근대화위원회 위원들은 각 계각층을 대표하도록 세심하게 구성된다. 예컨대 4차계획 수립 당시 위원수는 3,137명인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농민	107
사용자	715
사용자 전문단체	562
노조관계자	281
공무원	781
대학교수·전문가	691

3차계획안 작성시 위원수는 612명이고 그 구성은 공무원 113명, 전문가 134명, 사용자 대표 206명, 노조 대표 82명(그 중 25명은 농민 대표), 국가기관 대표 23명, 금융기관 대표 13명, 기타 각종 전문직 대표 41명이었다. 이에 비하면 4차계획때는 의사결정에 관한 국민적 참여폭을 크게 확대하였다고 하겠다.

근대화위원회 산하에는 특정 경제부문에 관한 계획만을 다루는 수직분과위원회와 모든 부문과 관련된 경제문제를 다루는 수평분과위원회(Horizontal Commissions) 두 가지가 있다. 3차계획안 작성시는 수평위원회는 3개, 수직위원회는 17개였었는데 4차계획때는 각기 5개와 23개로 늘어났다.

수평위원회는 총괄·조정을 맡은 ① 일반경제재정위원회와 ② 노동력위원회, ③ 생산성위원회, ④ 과학기술연구위원회, ⑤ 지역계획위원회 등 다섯이다.

수직위원회는 4차계획 작성 당시 23개였는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업, (2) 공예, (3) 건축 및 공공사업, (4) 연료, (5) 화학, (6) 교역, (7) 유지, (8) 해외지역, (9) 에너지, (10) 문화투자, (11) 보건 및 사회 투자, (12) 교육투자, (13) 도시개발, (14) 주택, (15) 농업 및 식품공업, (16) 제조공업, (17) 광업 및 비철금속, (18) 수산업, (19) 우편 및 전신, (20) 방송 및 TV, (21) 철 및 철강, (22) 관광, (23) 수송.

이상과 같은 수직위원회 내용에서 보듯 프랑스 계획은 명칭인 ‘근대화 및 시설계획’(Plan de Modernisation et d'Équipement) 중 앞부분이 시사하는 것처럼 가위 종교와 정당만을 배제한 프랑스 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의 근대화 및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포괄적 계획인 것이다.

한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컨대 제조공업의 경우 240개 부분으로 세분하여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무려 60개의 실무소위원회를 갖고 있다. 위원장은 Navarre 제조회사사장이 맡고 있으며 그 밑에 부위원장 2명과 보고자 1명, 당연직위원 9명, 위원 61명(그 중 8명은 노동조합 대표)이 구성원이었다.

일반적으로 수직분과위원장은 계획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여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4차계획 수립때는 위원장 중 10명이 대학교수였고 4명이 민간기업 사장이었다. 부위원장은 관련정부부처 공무원이 맡는다. 생산관련 분과위원회 위원은 사용자 대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 대표는 사회당을 지지하는 노동총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CGT), 인민공화파를 지지하는 프랑스로민주노동연맹(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CFDT), 공산당 계열인 통일노동총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Unitaire: CGTU)에서 골고루 참가하고 있다.

2.3.2. 經濟社會評議會

경제사회평의회는 1946-1959년 사이에는 경제평의회(Conseil Economique)라고 불렸었다. 1958년 10월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명칭을 경제사회평의회로 바꾸고 헌법 제 70조 및 71조에 평의회에 관한 규정을 하였다. 즉 경제사회평의회는 소위 헌법기관으로

그 기능은 의회에 대한 조언과 정부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의회에 제출하는 경제사회관계 법률안 및 정책을 사전에 경제사회평의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수는 1백69명인데 직업 대표와 지역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자, 피용자, 기능공, 기술자, 사무직을 대표하는 위원은 45명이다. 또 3개 노동조합연맹에서 각기 13명씩 39명의 위원을 보낸다. 또 전문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임명한 위원이 15명이다. 경제계획과 관련된 모든 안은 경제사회평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경제사회평의회는 실무는 분과(section)라고 불리우는 상설위원회에서 분담한다. 계획 관련 실무를 다루는 분과가 투자 및 계획 분과(Investment and Planning Section)다. 투자 및 계획 분과에는 20명의 평의원과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 6명이 배치된다. 20명 위원의 성분을 보면 노동조합 대표가 5명, 사용자 대표가 4명, 농민 대표 2명, 경제전문가 3명, 그리고 국영기업체·장인·협동조합·해외지역·가족협회·중간계급에서 각기 1명 등 6명이다.

경제사회평의회는 의사결정 과정을 4차계획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계획위원회는 3개의 서로 다른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17개 부문의 예측치를 경제사회평의회에 제출한다. 경제사회평의회는 이를 투자 및 계획 분과에 보낸다. 계획위원회 복수계획안은 경제성장률 3.0%, 4.5%, 6.0%, 소비증가율 3.9%, 5.1%, 6.2%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안은 경제성장률 5.0%가 바람직하다는 정부당국의 요망 내지 지시를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4.5-5.0% 성장률이 바람직하다는 계획위원회의 의견이 권고 형태로 첨부된다. 이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한 끝에 투자 및 계획 분과는 국제수지적자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6% 성장이 최선이라고 조정한다. 이같은 투자 및 계획 분과의 의견은 다시 수직위원회, 균형실무위원회 및 계획위원회의 3자 협의를 거쳐 5.5%로 결정된다.

한편 수상이 위원장인 최고계획평의회(Conseil Supérieur du Plan, 위원 60명)가 있어 계획 작성 및 수행에 2단계적 간여를 하는데 3자 협의를 통해 확정된 5.5% 성장안은 정부와 경제사회평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 최고계획평의회에서 검토된다. 이같은 검토를 끝낸 계획안이 경제사회평의회에 제출된다.

경제사회평의회에 제출된 계획실무진의 안은 그 심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각의에서 이를 심의, 확정한 다음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역시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심의를 거친 후 전체 회의에서 이를 비준한다. 그리하여 계획안은 최종 확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프랑스의 국민경제적 의사결정권 행사 또는 참여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전문가는 계획위원회위원 자격으로, 둘째, 근대화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에 대한 정부임명위원 자격으로, 셋째, SEEF, INSEE, INED 및 CREDOC 연구원 자격으로 거시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다음으로 정부공무원은 계획위원회위원, 계획위원회파견근무 공무원으로서, 또 최고계획위원회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무회의의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은 비정부기구인 경제사회평의회와 그 산하 분과위원회위원으로서, 또 근대화위원회산하 위원회위원으로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국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끝으로 국회 역시 최종적인 심의와 비준을 통하여 참여한다.

프랑스 계획은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어 집행하는 유도적 계획이므로 정부는 단지 공기업부문만 직접 관장할 뿐 민간부문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민간부문은 크게 농업 및 비농업 부문으로 나뉘어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영향력 행사는 부득이한 경우 가격통제등 직접 통제 형태를 취하는 수도 있으나 이같은 시장기능 동결적 개입은 예외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는 공공구매, 신용제공, 재정보조, 기타 선별정책 등 시장기제를 활용하는 간접 통제 방식을 취한다. 이는 중상주의 이래 뿌리 깊은 전통으로 남아 있는 프랑스식 규제주의(*dirigisme*)와는 판이한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2차계획이 국민적 호응 결여로 그 실사가 늦어진 데 대한 모네(J. Monnet) (초대 계획위원회위원장)나 특히 2대 위원장인 이르쉬(M.E. Hirsch) 등의 근본적인 반성에 근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

3. 微視 次元에서 본 決定權 行使

개별기업 운용과 관련된 가장 이상적, 민주적인 결정권 행사를 우리는 연방 체제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기업(*self-managed firm*)에서 볼 수 있다. 이하에서 우리는 호르바트의 설명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Horvat(1969, 1982)).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유고슬라비아는 스탈린과 티토의 이념분쟁을 계기로 소위 소비에트형 경제체제 흔히 말하는 스탈린체제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탈은 우선 소유면에서는 소비에트형인 국유로부터 한 차원 높은 발전단계인 사회주의적 소유로의 변화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수단은 생산을 직접 담당한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체들이 소유하도록 하였다(Sirc(1979)). 사회주의적 소유일 경우 소유권 행사 주체가 구체적으로

(2) Grossman(1974)은 수세기에 걸친 규제주의 전통과 역사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누구나 하는 의문이 자본주의 지지자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소유를 주체·객체간 관계로 보지 않고 단지 인간관계로만 보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생산자 조합이 사회주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조합구성원이 균등한 지분(equity)을 가지고 있는가, 그 지분이 자유롭게 처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저술을 통해서 분명히 밝힐 수 없었다. 소유문제를 비교적 상세히 밝힌 시르치(Sirc)의 저서를 보더라도 기업이 더 이상 기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또는 지급불능이 될 때는 청산되는데 그같은 기업청산으로 인하여 1964년에 노동자 5,500명이 실직했다는 통계는 제시하고 있지만 청산된 회사자산 또는 그 잔여분이 이들 노동자에게 배당되었는지, 배당되었다면 어떤 원칙 예컨대 공유에 근거한 균등분배나 그렇지 않으면 근무연수에 근거한 차등분배나 하는 데 대한 기술은 없다[Sirc(1979)].

그러나 소유권의 내용중 핵심인 처분권이 어떠한 것인지 소상하지는 않지만 소유가 소유자인 노동자의 의사결정권에 차별을 주지 않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기업구성원인 노동자는 모두 1인1표원리에 근거하며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다음의 <그림 1> 및 <그림 2>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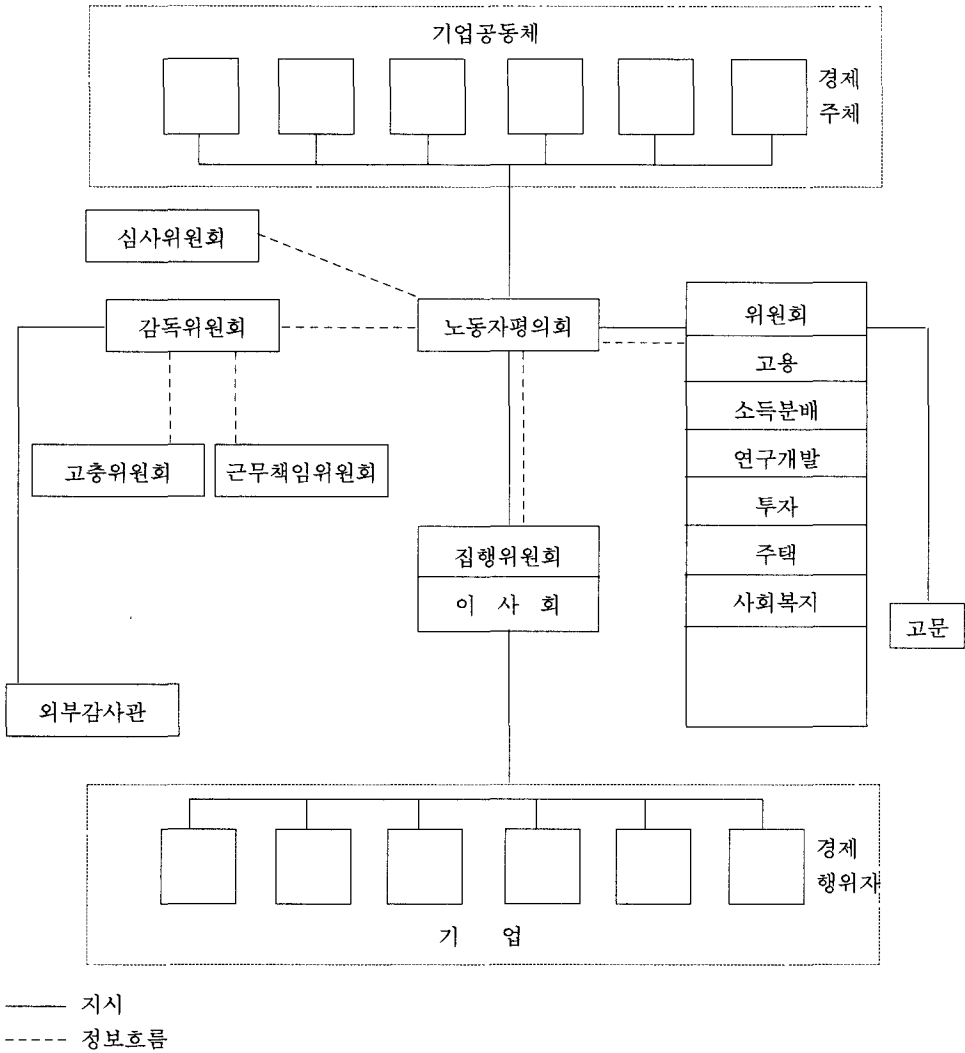
특정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자신이 분담한 역할과 관련하여 모두 기초작업집단(basic work group)에 속하게 된다. 이 기초작업집단은 가능한 한 작고 또 동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면접촉, 비공식 의사소통, 개인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익의 질을 같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초작업집단내의 의사결정은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한다.

- ① 의사결정 참가는 직접적이어야 한다.
- ②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은 투명해야 한다.
- ③ 부당한 또 영속적인 다수지배는 바람직하지 않다.
- ④ 여론조작은 무제한적이어서는 안된다.

이같은 원칙에 의해 조직되고 기능하는 기초작업집단을 우리는 이하에서 기본경제주체(basic economic unit)라 부르고자 한다. 이때 경제주체란 그로스먼이 말하는 경제주체와 같은 것이며 그로스먼이 이와 구별한 경제행위자(economic agent)와는 다르다.

이들 기본경제주체집단수는 기업규모 및 생산활동내용에 따라 기업마다 다를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는 이들 기초경제주체단위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소속된다. 기초경제주체단위에 속한 노동자는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은 노동자평의회에 집단을 대표한다.

노동자평의회(workers council)를 구성하는 평의원은 기초경제주체로 구성된 기업공동



<그림 1> 意思決定組織圖

체 (work community)에서 선출된다. 노동자평의회는 필요한 만큼 위원회를 거느린다. 호르바트가 적시한 위원회로는 고용, 소득분배, 연구개발, 투자, 주택, 사회복지 등 6개가 있다. 그리고 내부조직인 이들 위원회 이외에 외부인인 고문(external consultant)을 둘 수 있다.

한편 <그림 1>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동자평의회는 심사위원회와 감독위원회를 산하에 가지고 있다. 감독위원회는 고충위원회와 근무책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외부감사관을 둔다. 노동자 평의회는 위원회 권고 등을 토대로 결정권을 행사한다.

staff, 자문위원회 멤버, 그리고 또 개인 자격으로 의사결정의 한 단계 또는 복수 단계에 참여한다.

의사결정 참가 단계는 다섯이다. 첫째 단계는 발의 단계로서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8개로 구분할 수 있는 의사결정주체 모두가 이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다. 발의단계에서 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대상은 이를테면 중화학공업에 진출할 것인가 아니면 경공업에 진출할 것인가, 또 중화학공업에 진출한다면 발전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항공기산업을 할 것인가에 관한 의견이다. 이런 문제에는 모든 경제주체가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 2>에서 보듯 모든 경제주체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제2단계는 결정을 위한 준비 단계다. 팔호안 설명에서 알 수 있듯 대안적 내용에 대한 세부검토를 한다. 즉 앞서 단계에서 발전사업을 하자는 것이 절대 다수의견이었을 때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수력, 화력 또는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것인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다면 경수로를 택할 것인가 중수로를 택할 것인가를 놓고 전문가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의사결정의 이같은 내용 때문에 이 단계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결정주체인 집행위원회위원, 기업장, 전문 staff, 자문위원회위원, 그리고 구성원중 원자력발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전문가로서 개인 자격으로 의사결정에 참가한다.

제3단계는 사업내용 결정이다. 즉 전문가적인 협의 끝에 원자력발전사업을 하기로 하고 원자로로는 古里2호형, 웨스팅하우스형 등 몇 가지가 제안되고 그 장단점이 설명된다. 이같은 전문가적 판단 내지 권고를 토대로 주권자인 의사결정주체 (economic unit) 즉 기업공동체, 작업주체, 노동자평의회가 최종적인 기종 선택을 한다. 전문가집단은 개인 자격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제4단계는 사업 추진 단계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은 과학기술, 경영기술 등 주로 기술적 측면이 부각된다. 이 때문에 경제주체는 그 성격이 일변하여 경제행위자가 되어 기술관료(technocrat)라고 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 기업장, 전문 staff 그리고 전문지식을 가진 개인이 하는 기술적 의사결정을 쫓는다.

제5단계는 실행 관리 및 개선안 제시 단계다. 모든 일이 사전에 계획된 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인간사회 특히 경제문제다. 그러므로 모든 구성원은 최선의, 오류 없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 다음에는 일이 계획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제한다. 그러나 차질은 있게 마련이므로 계획 미스나 집행 미스의 내생요인 또는 시장변화나 기술변혁이란 외생요인의 작용으로 차질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필요한 제안

을 해야 한다. 차질 또는 잘못은 비전문가의 눈에도 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단계의 의사 결정에는 구성원 모두가 개인적으로 또는 조직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의사결정과정의 각 단계에 이처럼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구성원 전체에 의해 선출되는 노동자평의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일상적인 업무, 경영은 기업장을 정점으로 하는 전문경영층이 담당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기업장은 노동자를 해고·채용할 권한까지 갖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이들 전문경영층이 지배엘리트로 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위원은 매년 개선하며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Prout(1985)].

4. 우리나라에서의 可能性

4.1. 巨視經濟的 意思決定

경제계획에 전국민적 의사가 반영되게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계획 이상 훌륭한 사례를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장점(유도적 계획)을 유지하면서도 1인1표가 아닌 불평등한 소유에 근거한 차별적 권력행사가 갖는 폐단을 극소화한다는 장점(사전협조경제)을 살릴 수 있는 이상적인 틀이다. 비교경제체제론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은 조정기제면에서 시장이 근간이 되되 시장이 가질 수 있는 결함을 계획 = 명령에 의해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장치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여 프랑스형 계획은 혼합경제체제이되 흔히 혼합체제에 대하여 가해지는, 사실상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 비판인 '두 체제중 최악의 것만 혼합한 체제'가 아니라 '두 체제가 가질 수 있는 장점만을 혼합한 체제'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가 운위되면서도 1946년 이후 지금까지 프랑스 계획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비교경제체제이론에서 중시하는 또 하나의 특징인 소유형태와 관련시켜 평가할 때 그것은 사유를 근간으로 하되 불평등한 소유에서 오는 경제적 결정권의 독점과 그에 따른 폐단을 완화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적어도 계획수립의 모든 과정에서 가진자와 갖지 않은 자는 노·사대표란 틀속에서 동등한 발언권, 경제적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물론 프랑스도 자본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공익대표, 지역대표의 계급적 성향은 친노동적이기보다는 친자본적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가 최종적으로는 친자본적 성향을 갖듯 프랑스식 사전협조체제도 정확히 50대50의 합의를 언제

나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프랑스형 계획의 내용을 이루는 사전협조는 본질적 불평등사회에서 경제적 결정권행사의 불평등성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현존하는 최선의 장치다. 그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스웨덴에서 사회민주당 정부가 실시했다가 사민당정부 붕괴후 폐지된 임금기금법적 평등화 정책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사유를 완전 폐지하는 것뿐이다).

사전협조 및 유도적 계획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은 1962년부터 5개년 단위의 경제계획을 해왔다. 경제적 결정권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제계획체제는 네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그것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임기와 다름으로 해서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정치·경제적 국민의사를 계획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권력수반임기와 계획단위기간이 다른 것은 소련과 같은 일당독재국가에서나 무리 없이 기능할 수 있는 장치다.

둘째, 한국계획에는 4차까지는 정부 및 계획 관료와 그 산하기관만 참여했을 뿐 국민적 참여를 배제하였다. 5차계획 이후에는 참여의 길을 연다고 하였지만 완성된 계획안에 대한 공표전 설명으로 끝났지 국민의 경제적 결정권은 여전히 철저히 배제된 것이었다.

셋째, 일방적·하향적으로 계획이 집행되기는 북한, 쿠바 등도 우리와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북한은 수도에서의 군중대회를 시작으로 도·군·단위사업장 등에서 계획안을 지지하는 군중대회를 열었다. 그 과정에서 각 단위에 속한 경제주체는 자신이 속한 단위와 관련된 계획목표를 알게 되고 그 초과달성을 서약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시달된 계획목표지만 이를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게 되었다. 한편 쿠바는 계획안에 찬성하지 않는 지역 또는 경제단위를 결정권자인 카스트로가 직접 방문하여 설득함으로써 북한과 동일한 동일시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소위 경제교육이란 이름으로 실패한 계획내용까지도 성공한 것같이 호도하고 세뇌하는 장치로 이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갈브레이드의 표현을 빌릴 때 '전체 인민의 열성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성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국민운동인 경제발전'을 효율화하고 극대화할 기본장치인 경제계획이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성공적이었다고 하기 힘들다[Gabraith(1967)].

넷째, 프랑스에서는 계획목표는 사전협조를 통하여 전국민이 수립하고 그 달성은 민간 경제주체가 책임지며 정부는 그 성공을 유도하는 시장기제활용적 성격의 계획을 만들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경제계획은 소련이나 북한같이 목표량 할당방식을 취하였다. 특히 정책역점이 주어진 수출의 경우 목표액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다음 밖으로는 지역별, 공관별로 할당되고 안으로는 산업별, 협회별, 기업별로 할당되는 등 2중 3중으로 하달된

명령이 시장기제를 마비·정지시켰다.

이와 같은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의 경제계획 즉 거시적인 경제적 결정권행사는 프랑수형을 거의 그대로 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2. 微視經濟的 意思決定

프랑스식 경제계획을 통하여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국민의 경제적 결정권이 균등하게 행사될 때 유고슬라비아형 자주관리기업제도는 경제적 결정권과 관련하여서는 완전히 평등한 그 행사를 보장할 수 있고 경제효율면에서는 명령과 시장, 효율과 정의를 극대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유와 권력간 관계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좀바르트(W. Sombart)가 '자본주의란 지도권을 가진 생산수단소유자인 자본가와 무소유의 경제객체인 노동자가 시장이란 기구를 매개로 협동하는 유통경제조직'이라고 정의한 데서 알 수 있듯 지휘권 즉 경제적 결정권은 자본가에게만 있다. 자본가가 지휘권 = 경제적 결정권을 갖는 근거는 그가 생산수단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무소유의 노동자는 기계나 마소같은 발언권 없는 경제객체로 존재한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자주관리제도가 성립·지탱될 수 있었던 것은 소유제도가 사유가 아닌 사회주의적 소유 즉 재산이론에서 말하는 공유(communal ownership)와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기업장이 노동자를 고용 또는 해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동자는 기업이라는 공동체(community)의 구성원으로 공동체 재산인 기업의 이용, 수익, 변형, 처분과 관련하여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철저하게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으므로 소유에 근거한 공동결정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두 가지 가능성만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사유를 전폐하고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을 공유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바람직한 소유형태이고 또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가장 확고한 기반조성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는 공유란 점에서 국유에 근거한 소비에트식 공산주의경제와도 다르다. 그러나 이는 더 이상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런 체제는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인 것이다.

공유에 근거한 완전평등적 결정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남은 유일한 대안은 경제적 결정권을 소유가 아닌 인격, 전문지식에 기초시킨다는 것이다. 이같은 변형도 자본주의의 본질과는 합치되지 않는다. 자본주의란 소유와 더불어 결정권도 자본가가 독점

하고 있는 사회경제조직이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의 발언권이 극대를 향하여 가던 1946년에 슬릭터는 미국경제가 이미 자본주의경제가 아니라 노동주의경제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정권 행사제도는 자본주의의 변모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또 자본주의의 변모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독일의 경영참가나 공동결정은 비록 제한된 범위로이기는 하지만 소유와 관계없는, 소유에 근거하지 않은 결정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또 독일처럼 법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경제도 갤브레이드의 분석대로라면 그런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기술집단(technostructure)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 관행이 바로 그것이다(Galbraith(1967)). 시원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변화, 자본주의의 변질은 1920년대말부터, 즉 벌(Berle)과 민스(Means)가 소유·경영분리를 확인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유·경영·노동이 하나였던 경제체제는 소유·노동분리를 통하여 자본가·노동자로 분열된 쯔바르트적 자본주의가 되었지만 다시 소유·경영분리에 의하여 순정한(genuine) 자본주의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주의가 이미 이렇게 변질되어 자본가는 결정권 행사에서 크게 배제된 단순한 배당 수령자, 일종의 부재지주로 전락했고 결정권은 소유 없는 전문경영인이 갖게 된 이상 소유 없는 결정권 행사를 모든 경제주체에게 평등하게 분산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602-216

전화: (02)585-4843

參 考 文 獻

Bauchet, Pierre(1962): D. Woodward(trans.)(1964), *Economic Planning: The French Experience*, New York, Frederich A. Praeger, Publisher.

Bicanic, Rudolf(1973): *Economic Policy in Socialist Yugoslavia*,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ulding, K.(1968): *Beyond Economics, Essays on Society, Religion & Ethics*,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Flakierski, Henryk(1989): *The Economic System and Income Distribution in Yugoslavia*, New York, M. E. Sharpe.
- Galbratith, J.K.(1967): *The New Industrial State*, Boston, Houghton Mifflin & Company.
- Gintis, Herbert(1972): “Consumer Behavior and the Concept of Sovereignty: Explanations of Social Decay,” *American Economic Review*, **62. 2**, May.
- Grossman, G.(1974): *Economic Systems*, 2nd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Hacket, J., and A. Hacket(1963): *Economic Planning in Franc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imited.
- Hayek, F.A.(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 _____ (1973): *Law, Legislation and Liberty*,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 Heathfield, D.(ed.)(1977): *The Economics of Co-Determination*, London, The Macmillan Press Limited.
- Hoff, T.J.B.(1938): *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Society*; M.A. Michael(trans.)(1949), London, William Hodge & Company Limited.
- Horvat, B.(1969): Gudrun Lemân(trans.)(1972), *Die Jugoslavische Gesellschaft, Ein Essay*,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강신준 역(1984), 『자주관리제도』, 서울, 풀빛.
- _____ (1982):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ism*, Oxford, Martin Robertson & Company Limited.
- Keynes, J.M.(1931): *Essays in Persuasion*, London, Macmillan.
- Laski, Harold(1928): *A Grammar of Politic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Myrdal, K.G.(1957):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Gerald Duckworth & Company Limited.
- Pigou, A.C.(ed.)(1925): *Memorials of Alfred Marshall*, London, Macmillan and Company Limited.
- _____ (1937): *Socialism versus Capitalism*, London, Macmillan & Company Limited.
- Prout, Christopher(1985): *Market Socialism in Yugoslav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irc. Ljubo(1979): *The Yugoslav Economy under Self-Management*, London, The Macmillan Press Limited.

Slichter, Sumner(1961): *Economic Growth in the United States: Its History, Problems and Prospects*, Baltimore, Maryland,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J.H. Furst Company.

Sohrenk, M., Cyrus Ardalan, and Nawal, A. El Tatawy(1979): *Yugoslavia*,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Sombart, W.(1919): *Der moderne Kapitalismus*, erster Band, München und Leipzig, Verlag von Dunker und Humboldt.

Tawney, R.H.(1931): *Equality*, London, George Allen & Unwin.

Weiss, Andrew(1990): *Efficiency Wages: Models of Unemployment, Layoffs and Wage Dispersi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